

2021 학생의 인권에 관한 학부모 안내자료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010. 10. 5. 공포)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은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이란?

-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성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체벌·따돌림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소명기회 보장 등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체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근거로 한 규범입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인권기구 등의 체계(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으로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 기구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담당 부서를 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하고, 학생인권담당 부서에서는 인권교육·학생인권실천계획 등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방법은 ‘부록. 학생인권옹호관 홍보 리플릿(7쪽)’ 참고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진흥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20명 이내)와 도 내 학생으로 구성된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100명 이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책무

-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상담 주요 예시 및 판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학생은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출석번호 부여 시 남학생을 앞 번호로, 여학생을 뒤의 번호로 한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남녀 간에 선.후가 있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 하여 차별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 가나다 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다문화, 차이나, 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를 직접 빗대는 등의 혐오표현을 한 경우
 -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학교 안 혐오현상과 교육의 과제)에 따르면 학교 안에서도 혐오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됩니다.”


-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 간접체벌 포함)
 -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위의 경우와 같이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에서 금하고 있는 지도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학교에서는 특히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 교실에서 외투를 못 입게 하고 외투 색을 제한하는 경우
 - 학생들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기호에 따라 외투를 입고 벗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2018년 이에 대해 편안한 교복 착용 측면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집니다. 안전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일기장 등 사적 기록물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절차를 밟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수학여행에서 일부학생의 음주를 이유로 전체학생 소지품을 동의 없이 검사한 경우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로 소지품 검사요건을 규정하고, 교육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 동의절차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일괄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합리적 의심이 있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관련된 징계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의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일괄 수집한 경우

-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형편을 묻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목적에 맞고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허락 없이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경우

-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교복에 명찰이 박음질 형태로 고정식인 경우

- 성명은 개인 신상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는 성명권의 노출을 야기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형 명찰보다는 목걸이형과 같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명찰 위치 주머니 위에 덮개를 만들어 학교 밖 필요하지 않은 장소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6조)**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학생이 학교 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교사가 임의적으로 제거한 경우

- 학교는 학생이 대자보를 게시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대자보 게시의 절차·방법·장소 등에 대해 정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게시 글의 내용이 모욕, 명예훼손 등 현행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지도가 가능합니다.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 예시(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4조)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여학생이 생리조 인한 고통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 생리통으로 공결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 학생의 생리공결 신청 시 병원 진료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여학생이 생리통이 극심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월 1회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출석인정 시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장이 당해 성적 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검색하여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누구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
학부모와
선생님도 상담
가능해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의 침해예방과 상담·구제를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화 상담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 하남, 양평
031-820-0632

안양, 과천, 안산, 화성, 오산,
군포, 의왕, 부천, 광명, 김포, 시흥
031-820-0633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가평, 포천
031-820-0634

방문·온라인 상담

방문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306호 학생인권담당실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경기학생인권의광장 **검색**

학생인권옹호관 ▶ 인권상담 ▶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서 작성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